

바누아투(Vanuatu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86년(적립금고), 1987년 시행.

2 제도형태

- 적립금고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
 - 정규직 근로자(협동 조합원 및 바누아투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포함)
 - 외국인은 타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면 면제를 적립기금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
- 임의가입 : 자영자 및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
- 적용제외
 - 적립금고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사용자 제공 퇴직제도에 보장받는 자; 고용계약이 2개월 미만인 농업 및 임업 근로자; 재택근무자; 바누아투에서 근로하는 외교적 특권을 가진 외국인; 수감자, 정신병원 환자 등 특정 다른 부류의 사람들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총 월 가입소득의 최소 4%(추가 임의납부 가능); 임의 가입자에게는 월 1,000 vatu에서 10,000 vatu까지 임의가입 가능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 소득 : 3,000 vatu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 소득 : 없음
- 자영자 : 월 1,000 vatu ~ 10,000 vatu
- 사용자
 - 총 월 가입임금지금액의 4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은 3,000 vatu임.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은 없음
- 정부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- 55세 도달자;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경우 (외국인 또는 시민권포기자) 또는 적립금고제도의 소액 금융 제도 하에서 채무상환 시 연령제한 없음. 가입자가 금액을 인출하였거나 55세 이후로 추가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하는 경우,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마지막 인출일로부터 2년 후까지 인출하는 것이 금지됨
- 장애연금
 -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모든 근로가 불가능해야 함
 - 총괄 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 등록된 의사에 의해 장애등급이 결정됨
- 유족연금
 - 기금 가입자가 자신의 기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지급됨
 - 기금 가입자가 기혼인 경우,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배우자, 자녀, 사망자의 피부양부모, 사망자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임. 가입자가 미혼인 경우,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가입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임
 - 사망보조금(특별사망급여) : 가입자 사망 시 지급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급여
 -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보험료 납부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이 지급됨
 - 이자율 조정 : 적립금고위원회가 매년 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이자율 결정
- 장애급여
 -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보험료 납부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이 지급됨
 - 이자율 조정 : 적립금고위원회가 매년 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이자율 결정
- 유족급여
 -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보험료 납부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이 지급됨
 - 이자율 조정 : 적립금고위원회가 매년 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이자율 결정
 - 사망보조금(특별사망급여) : 가입기간 연수에 따라 최대 230,000 vatu까지의 일시금이 지급됨

7 관리운영기관

-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
 - 전반적인 감독 제공
 - <https://doft.gov.vu/>

- 적립금고위원회(Provident Fund Board)
 - 총괄 책임자를 포함 6인 3자 위원회에 의해 관리
 - 제도 관리, 상업 기금 관리자 임명, 투자 기준 제정
 - <https://www.vnpf.com.vu/>

- 바누아투 국가 적립금고(Vanuatu National Provident Fund)
 -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